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26 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윤재옥ㆍ이인선ㆍ김 건

김기웅 · 김태호 · 최수진

정성국 · 이종배 · 엄태영

백종헌 • 이주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등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본문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을 말한다)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등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, "시·도지사가"를 "시·도지사등이"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에게"를 "시·도지사등에 게"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·도지사등이"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에게"를 "시·도지사등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단서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등은"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등" 으로 한다. 제94조제5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·도지사등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 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 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 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운송 개시) 제4조제1항에 제7조(운송 개시) -----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 -----특별시장·광역 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 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 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 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 에 따른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.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는 그 대도시의 장을 말한다) 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 도지사등"이라 한다)-----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 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시 • 도지사등은-----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. ·도지사등이-----

제19조(사고 시의 조치 등) ① (생 략)

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"중대한 교통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45조(사용명령) ① <u>시·도지사</u> 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 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 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, 공 중(公衆)의 편의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망(運送網) 정 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 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

<u>.</u>
제19조(사고 시의 조치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시·도지
사등에게
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사용명령) ① <u>시·도지사</u>
<u> </u>
<u>.</u>
② <u>시·도지</u>

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제75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 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장(이하 "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장"이라 한다)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.

② <u>시·도지사는</u>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 임할 수 있다.

제84조(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) 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 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한[이하 "차령"(車齡)이 라 한다] 및 운행거리를 넘겨

<u>사등이</u>	-
	-
제75조(권한의 위임) ①	-
	-
	-
	-
	-
	-
	-
	-
<u>시 · 도지사등에게</u>	-
② <u>시·도지사등은</u>	-
	-
	-
	-
	-
제84조(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))
①	-
	-
	-
	-
	-
	_

운행하지 못한다. 다만, 시·도 지사는 해당 시·도의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 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시·도지사는 자동차의 제 작·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 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 국토교통 저 부장관, 시·도지사(터미널사업 ·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)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(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<u>\lambda\] •</u>
 도지사등은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·도지사등은</u>
 (조) 제 회 기 가 O)
④ (현행과 같음)
세85조(면허취소 등) ①
<u>시 · 도지사등</u>

에 해당하면 면허·허가·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·제 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 에는 면허,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41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9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/ 경박)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<u>시·도지사가</u>부과·징수한다.

1. ~ 4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4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
<u>시 · 도지사등</u>
0]